

의안번호	2213725
의 퇴 인	안도걸 의원
회 답 일	2025. 10. 29.
추 계 번호	25A5687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9조 (배우자상속공제)	○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 추가 - 배우자 동거주택 상속공제액
2	안 제23조의2 (동거주택 상속 공제)	○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 추가 및 한도 상향 조정 등 -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 배우자 추가 -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액: 현행 6억원 → 개정안 8억원 - 동거 기간: 현행 10년 → 개정안 8년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9조 (배우자상속공제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3조의2 (동거주택 상속 공제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추가하고,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한도액을 현행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인상하며 동거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하는 경우 상속세의 세수 감소가 예상
 - 현행 상속공제 대상 동거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(개정안 8년)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함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배우자 등 상속인이 8년 이상 동거한 주택 수와 그 가액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- 참고로 최근 3년간 동거주택 상속공제 현황을 살펴보면, 2022년 455건(1,795억원), 2024년 626건(2,564억원)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,654건(6,786억원)의 동거주택상속공제 발생

[표 1] 최근 3년간 동거주택 상속공제 현황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
건수	455	573	626	1,654
공제금액	1,795	2,427	2,564	6,786

자료 : 국세청 답변자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